

제429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8)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0)
1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3)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1)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8)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2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6)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3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

상정된 안건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4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5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10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14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16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8)	16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22
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25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0)	27

1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3)	27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1)	27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36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6
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36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36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36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36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	36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36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36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43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43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43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8)	43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5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52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55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55
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58

2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6)	58
3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64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오늘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정구창 여성가족부차관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김기남 기획조정실장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10시14분)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쪽입니다. 여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요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여성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등 유사입법례 마련 과정에서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라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에도 해당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결국은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랑 협의해서 만들자라는 취지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말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예, 위원님.

○조은희 위원 방통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이 돼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괜찮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조은희 위원 이의 없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오셨으니까 통과돼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앉으시면 잠깐만 숨 돌리고, 의결할 때가 돼서……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 취지 자체가 2차 가해 방지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보도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2차 가해라는, 2차 피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는 한가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모르겠네요.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여성폭력기본법에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군요.

한지아 위원님 숨을 돌리셨으면 이거는 저희 믿고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10시17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확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청소년의 용어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체계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등 정의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돋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위탁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법률에 고립·은둔 청년이란 표현이 있던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최근에 만들어진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복지부 소관법에 있는 정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서 두 법의 정의를 동일하게 하는 게 수정의견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의 11페이지에 있는 법안 문구를 보면?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이주희 위원**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법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21대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발의도 했고 22대 때 취약청년 지원법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었지만 늘 이게 가장 문제의식은 실태조사가 안 돼 있고 부처 간 칸막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합 대응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10페이지를 보면 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약 14만 명이고요 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령 구분에 따라 수치가 다른데 이게 공통된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가장 기본되는 통계나 실태조사 정확성은 어떻게 보는지, 19세에서 20세까지는 두 기관 모두 겹치는데 지원 대상이 동일하게 될지, 연령 중복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 저희와 복지부가 약간 중복돼 보이지만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연령을 저희는 주로 9세에서 18세를 학교 밖에서 중점 지원하고 복지부는 19세에서 34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은희 위원** 그런데 왜 9세에서 24세라고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것은 복지 지원법의 전체 대상이고요. 실제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부가 시행령 만들 때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추정 규모는 저희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추정한 거고 복지부 통계는 통계청 조사를 가지고 국조실이 추정한 통계를 쓴 겁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법하고 실제로 실행은 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스스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게 저희가 법이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청

년 대책 일환으로 이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부처 간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조정해서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부처 간에 논의가 됐고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복지부의 시행령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 하위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침이나 그런 법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부처 간에 혼선이 없도록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여가부는 청소년 시기에 교육적 성격이 강하고 복지부는 직업훈련과 사회적 자립을 지향해서, 그런데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은 시도가 사업 대상 지역이 다른데 점진적으로 내년에 확대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 간에 상담과 교육, 소통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고립·온둔 중장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이어 간다는 점 그다음에 단기적 개입이나 분절적인 사례 관리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화되는 패턴 자체를 추적하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여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분절적 사업으로 청소년기가 중장년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와의 업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복지부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이 법하고만 관련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항상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의 나이 중복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중복되지 않게 법을 쭉 개정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냥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실제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이상으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행법이 유지되는 건가요?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업무 중복 이슈가 있을 텐데 국회에다가 여러 상임위 법을 좀 조정해서 청소년과 청년을 딱 중첩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가 그게 궁금해서요.

○조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일차원적 생각 아니세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우리나라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돼 있고 청년은 34세로 돼 있습니다. 사실 또 청년을 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조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분절적으로 돼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지금은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은 일자리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해서 국조실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는 사실 유스

(youth)라고 해서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다 같은 부처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서 지금 법이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중첩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청소년이자 청년인 게 저는 좀 납득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은 일단 이렇게 업무 중복되지 않게 복지부랑 협의를 하위법령 만들면서 하시되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게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여가위원회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사실 이번에 국정기획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청소년과 청년의 관할 부처를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한 데도 대상자가 겹치고 결국은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8세로 안 끊은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소년이 19세가 된다고 갑자기 성인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복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성년기로 안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적절한 지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19세가 됐다고 갑자기 ‘넌 청소년이 아니니까 더 이상 지원 못 해. 상담도 못 해. 사례 관리도 못 해’ 이렇게 하게 되면 대상자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조금 더 긴 연령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에서 논의를 좀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끊게 되면 분명히 피해나 문제는 생기는 것 같아요.

○**한지아 위원** 저는 어느 정도 중복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쪽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는다면 복지부에서 덜 받는다거나 그런 장치로 되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끼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은둔형 외톨이 그러면, 히키코모리 이런 것은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기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 정의를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 그러면 이게 꽤나 포괄적인 거라서 실제로 지원 사업할 때 정의를 어떻게 하시나……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런 경향을 보이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법에는 상당한 기간으로만 그냥 두겠다는 거지요, 수정의견이?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쪽 2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군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쪽,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위기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 관계 법령을 고려 시 학교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도록 의무 부과 및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타 부처 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부처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 의견을 수용해서 개정안의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주체를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두 위원회 간의 중복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그동안 청소년 정책과 좀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거든요. 학업 중단하거나 정서 지원하거나 또 자립, 가정 해체 등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관들이 모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세부적 현안을 모두 심층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돼서 위원 하도록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건 뒷부분 조항인 것 같은데……

○조은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건 다음 항목 이니까 그 전까지,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이 부분만 우선 먼저 의견 주실래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결국 지금 수정안하고 부처 수정의견하고 문구가 좀 다른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저는 수정의견을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 그렇군요.

그러면 16페이지에 강경숙 의원안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부처안 이렇게 비교해서 부처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1)

(10시31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보다 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통합한다면 두 위원회 간 중복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심의하도록 할 경우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아까 제가 하던 거 마저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은 여가부장관이 전문가를 위촉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 소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위원회가 중복되니까 통합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그냥 놔두면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차관님들한테 흡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소위원회를 둬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이것을 정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22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시면 정부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8명 그리고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14명이 들어와서 정부위원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이 6명이 들어와 있고 그중의 2명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실무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이고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입니다. 실무위원회를 조금 효율적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을 더 참여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지아 위원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차관이 위원장이신 실무위원회니까……

○한지아 위원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는 몇 번 정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보통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거치는데요. 그 뒤에 23쪽 회의 개최 결과를 보시면 사실 학교 밖은 위원회가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2024년에는 개최 실적이 거의 없었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지난해에 열렸습니다. 보통 안건이 올라갈 때도 실무위원회 의견수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지아 위원 열일곱 번의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시행할 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이렇게 더 빈번하게 개최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일곱 번을 정말 전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자주 개최된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더 심도 있고 더 빈번하게 개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지?

○조은희 위원 좋은 지적이시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청소년정책관 최은주입니다.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또 확실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정책위원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처럼 정말 일곱 번 이상 심도 있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꾸지 않을 거라면 사실상 이거를 통합하는 게 얼마나 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빈도 수나 아니면 심도 면에서는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인 편의상으로는 통합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같은 차관이 하는 거라면, 여기에 논의된 게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세 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열 번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극명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다시 여쭤봅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다 그거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두 번 정도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실무위원회를 학교 밖 쪽으로는 반드시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그걸 어떻게 답변하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어떤 문구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거지요. 저는 그게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개수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실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안 해도 그만이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사실은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이나 하위법령 근거를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실무위원회는 보통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 관계 부처가 14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실무위원회는 차관급이라 그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 밖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한지아 위원 아니,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부처는 좀 적게 들어오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최소한 일곱 분을 민간위원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인력에 있어서도 사실상 7명 플러스 결국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올라가서 다시 심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각까지 다 더해서 그 결과들이 더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실지에 대한 게 분명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희 위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법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청소년 위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 위촉하는 청소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촉하는 민간위원도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고 대통령령을 봐도 학교 밖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라도 청소년 위원의 위촉 기준, 정책위원회 운영 관련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것과 관련된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일단 지금 현재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 취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를 그냥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시행령 안에도 좀 녹여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마찬가지로 의견드리면,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금 업무가 특별히 문제되거나 현안은 없습니까?

유정미 과장님 이시지요? 현안은 없어요? 별로 논의하실 게 없어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유정미 저희가 25년도 대책을 만들 때 그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을 했고 지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작년에는 지원 위원회도 없고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청소년 관련 정책 중에 학교 밖은 여가부고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에서 주로 담당하니까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논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 보니 업무가 별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국감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실무위원회가 몇 명인지도 시행령에 안 들어 있어요, 관계 부처 장관이 그냥 자기 부처 사람들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1년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얼마나 열어야 되는지도 아예 없거든요, 시행령에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행령에서 관련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기본법을 찾아보는데 전혀 안 들어 있네요. 그거는 오늘 법 개정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 시행령도 여가부에서 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저어됩니다.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을 보고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여가부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의 지적하신 것처럼 24년에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요. 23년에 한 번 했어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그냥 가외 일거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넣어 놓으면 업무가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냐 하는 위험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여가부의 확실한 계획을 보고서, 여가부 플랜을 좀 보고 나서 해야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시지요. 저도 팬찮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5년간이었군요. 제가 아까 전에 1년간 7회인 줄 알았더니 5년간 7회였네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전제로 시행령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향후 법이 바뀌면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서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 고 위원회 개최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시행령에 들어갈 안을 다음 법안소위 전까지 만들어 오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한규 예,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예전의 여가부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세심하게 위원회를 따로 개최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시는지가 정말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5년간 7회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재고를……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약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립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까지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아예 그걸 유지해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는 한지아 위원님의 의견과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맞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차관이 주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옮겨서 장관이 직접 주재해서 전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안정이나 힘을 실어주는 데 있어서는 더 적절할 수 있고.

정부 내 위원회가 너무 분화돼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또 비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통합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한지아 위원님의 걱정도 저는 알겠으니까 여가부에서도 잘 논의하셔서 청소년정책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 내용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10시47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7쪽입니다.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도·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등의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청소년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유발행위의 재발방지 및 선도·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실질적으로 예방적·회복적 활동을 하는 보호기관들이 인프라가 어떻게 잘 구축돼 있는지, 이 인프라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보호지원 인프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법 개정을 하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사후 점검 체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청소년사회안전망이라고 지자체별로 사회안전망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선도·보호 대상 청소년 발굴 통보는 사실은 경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사회안전망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회안전망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도·보호 청소년 통계까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그런 통계까지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후 점검 체계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조은희 위원 저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궁금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법을 보면 복귀·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장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런 제도는 있는데 부모님이 알 수 있게 알려 주자라는 게 오늘 법안의 취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 법 시행령에는 문제가 되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보호지원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주로 상담·교육·자원봉사를 하거나 수련·체육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 청소년복지 지원센터의 이런 지원 실적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해 13만 9000명 대상으로 이런 활동들을 지원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3만 9000명이나 활동을 했다고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그러니까 예방적·회복적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 등 지원한 실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하여튼 오늘 법 개정안은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자체는 아니고, 그것은 기준에 있는 거고 그런 제도가 있음을 부모한테 알려 주게 하라는 거라서 차원은 다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부

모들이 잘 모르니까 신청하게 해서 애들이 술·담배 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잘되는지를 제가…… 인프라나 연계가 잘돼 있는지 사후 체계나,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하고 나서 청소년이 더 좋아졌는지 이런 게 그동안 통계가 있었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 연계된 통계는 있습니다. 경찰이 저희한테 선도·보호조치라고 통보한 건이 지난해 6700건이 있었고요.

○조은희 위원 그걸 경찰에 맡기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경찰이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그게 통계가 세분화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과나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은희 위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경찰의 통보가 있기 전에 여가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검토해 봐 주세요. 경찰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가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지금은 법에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는 등 그런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선도·보호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우선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쨌든 조금 더 보완해서 지침에 좀 더 촘촘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38)

(10시54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1쪽입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족친화지원센터는 2개소에 불과하므로 장기간 사업 중단 방지를 위하여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보통 중단하지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이 지정취소 입법례가 저희가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른 여타 입법례에도 다 있는 내용인데 이게 법제처가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월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법제처에서 좀 길게 가져가라고 해서 6개월을 검토했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장기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셔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3개월 정도로……

○**한지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중단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보통 입법례에 따라서 그냥 조정되는 겁니다.

○**한지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2개소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단된 사례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중단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법제처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나 만약 그런 게 생기면 업무 공백이나 대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고치는 이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고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업무 공백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3쪽입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준에 가족친화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현재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인 가족친화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인증기준으로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규정 중 고용·근로·쳐우 환경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법규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장철민 의원안 중에 ‘고용·근로·처우 환경’ 이 표현만 빼내는 거지요, 지금 수정의견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에 시행일자만 공포 후 6개월로 바뀌는 것 그 두 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한지아 위원** 궁금한 게, 고용·근로·처우 환경을 왜 빼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의원님께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흡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가족친화인증은 저희가 가족친화제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것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물론 저희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인증을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면 인증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이주희 위원**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재인증이나 연장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거쳐서 탈락은 시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결국 가족친화제도라는 게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들을 인증해 주고 그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요건으로 법에 정해진 걸로 한정해서 보는 게 낫지 고용·근로·처우 환경 이렇게 되면 좀 추상적이라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장철민 의원한테 전하면 되는 거지요? 당신 법안이 좀 잘못됐다고 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아닙니다. 사후관리는 중요하고 다음에 또 사후관리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고용·근로·처우 환경이라기보다는 장철민 의원안 앞부분에 보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정한 고용·근로·처우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 구체성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는 내용에 저희가 법으로 포함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사례를 여쭤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법에서 명시한 고용·근로·처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쨌거나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지 못하거나

나 사실상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열된 고용·근로·처우 환경 이게 사실상 법적 차별까지도 가능한 사안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을 제외하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고용·근로·처우 환경 이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사실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고평법이나 근기법을 위반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탈락을 시키면 되는 건데 구태여 진입부터 이렇게 너무 브로드(broad)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현재도 중소기업이 한 1%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더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주희 위원 사후적으로 규제하자 이런 취지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그렇지요. 사후관리의 문제가……

○김남희 위원 아니면 제가 약간 중재안을 제시하면 지금 여성가족부 고시에, 근로기준법 나와 있는 것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외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문들이 죽 열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인증의 기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근로·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법규…… 여기에 대통령령 나와 있네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열거를 죽 해 놓으면 걱정하시는 우려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그 법들이 고시에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고용·근로·처우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주희 위원 지금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데 형식상으로 보면, 지금 장철민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계속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장철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법률에 명시를 해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함해서 정하라는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장 의원님 안에도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장철민 의원안에 있는 대통령령은 현재 있는 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자라는 내용인 것 같고. 저도 지금 법을 봤더니 34페이지에 ‘이 경우’ 이하는 다 완전히 신설되는 거라서, 그런 거지요?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상 대통령령에 이 내용들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법규가 제한될 거니까 고용·근로·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라는 내용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네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하면 되는 거라 법에서 최대한 범위를 확정해 둔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철민 의원안이.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사실 여가부 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고

시로 정하고 있다가 법률에 명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하자는 거니까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굉장히 한 단계 레벨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업하는데 거기다가 고용·근로·처우 환경 이런 여가부가 사실상 다 파악하기 어려운 업무나 이런 것을, 기준도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사실 가족친화 인증을 많이 장려함으로써 가족친화기업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가, 법률로써 하면서 범위를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인증받을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 말이지요. 어차피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또 다른 쪽으로 사회적인 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할 텐데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하면 인증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저는 아까 여가부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진입장벽이라는 말. 그래서 장철민 의원은 법률로 제정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소위원장 김한규**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철민 의원의 입장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조은희 위원** 아니, 장철민 의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셔서, 제가 계시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고시에서도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열거돼 있으니 여기 법에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기존이랑 더 염격해지는 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여가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근로·처우 환경 이게 너무 브로드(broad)해서 그냥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라고 해도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여기 33페이지에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여성가족부 고시에도 보면, 지금 김남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고시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구체적 내용은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지 표라든가.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장근로 제한이라든지 야간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그래도 고용·근로·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한해서 대통령령에 정한다면……

그런데 저는 대신에 조문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문 자체가 너무 브로드하게 읽혀서 차라리 인증의 기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근로·처우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남희 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법을 쭉 열거를 해 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 빼 버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근로·처우 및 가정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소위원장 김한규** 그 정도로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님.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정을 해서, 조금 바꿔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

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여가부가 하던 내용을 그대로 담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조은희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수정해서 해 주세요. 오후에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부분은 문구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의결은 여차피 지금, 물론 3번 항목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5쪽입니다. 가족친화 인증 사후관리 조사 의무화 및 조사주기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 조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가족친화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조사 주기를 분기별로 짧게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6502개사에 달하고 있는 바 행정·재정적 부담 및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주기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신 건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만 주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러니까 조사 주기가 분기별, 반기별, 매년 이렇게 있는데……

○소위원장 김한규 논의를 해 달라?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분기별은 너무 짧고.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장철민 의원님께서 이거를 주기를 좀 당기라고 하셔서 일부 고용부의 자료는 지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이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분기별로 하는 거는요, 안 그래도 여가부가 인원도 적고 또 이번에 보강됐다 해도 17명만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이 신설된 거에 다 가고 여성 관련한 고용에 뭐 하는 그 직원 노동부에서 3명 오고 그리된 상황에서 분기별로 6502개에 달하는 거를 다 하라는 거는 좀 무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가부에서 적절한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2022년하고 23년에는 연 1회 하셨고 작년에는 연 2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어떤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1회랑 2회를 해 보셨잖아요. 저도 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1회 내지는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반기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해 보신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사실 분기별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었고요. 반기별이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넣으면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뭔가 이렇게 3개월, 반기, 숫자를 대충 중간을 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아까 보고 연 1회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가부가 반기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아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횟수를……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반기로 하면 그게 또 법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해야 된다’ 하면 어떨까요?

○**김남희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꿈 아이디어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지금 이 5·6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문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통과해야 되니까요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11시15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9쪽입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하는 대상을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결혼중개업의 수수료·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용자의 의미가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로 해석되고 있어 홈페이지 공개 정보의 일부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연결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시행규칙 제8조 4항 단서를 개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보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연결화면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회원 가입이나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제8조 4항 단서 개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법 개정 실익은 미미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40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석님께서…… 40쪽 하단의 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들여다보시면 초기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5번, 6번, 7번은 가입을 안 하면 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 아니라서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누구든지’로 바꾸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몇 개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혹시 아내가, 재혼 이런 거 보니까 의심할까 봐 되게 숨기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는 시행규칙에 나온 제일 중요한 수수료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규칙을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 넣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예외적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연락이 오게 되는 구조들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도 그에 따라서 초기화면은 아니더라도 연결화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정보 제공이나 가입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조은희 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이나 위반 시는 어떻게 제재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스드메 제정법을 발의해 놨거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여기도 완전 깜깜이에요. 제가 그거를 제정법을 발의해 놓고 곧 공청회를 할 텐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은희 위원** 제 그 얘기에 답을 해 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매년 지자체를 통해서 점검을 나가고요. 신고필증을 붙였는지 가격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일부는 저희도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어 듀오 같은 데 어떤 제재가 있었나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물론 저희가 국내도 하고 국제도 하는데……

○조은희 위원 주로 국제를 얘기하시는가요? 국제결혼업체……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아니요, 둘 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듀오는 어떻게 됐냐고요? 알고 있는 건 듀오가 제일 크니까.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입니다.

듀오 같은 국내 업체도 신고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은 하는데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법에 있는 사항들은……

○조은희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동안 관리·감독 결과를 자료로 보내 주세요.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기점검 위반 시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매년 그 결과보고 있으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에게도 보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예.

○소위원장 김한규 시행규칙에 보면 초기화면이 아니라 연결화면을 통해서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기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링크에서 세부로 들어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일단 연결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개인정보를 더 넣어야지만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듀오 같은 경우에도 나이, 성별, 학력 이런 거를 다 넣어야 돼요. 그걸 5초 안에 넣으면 다 보여 준다고 하는데 그 5초 안에 개인정보를 다 넣으라는 거지.

그래서 실태 점검을 현장 가서 필증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홈페이지로 그냥 개인이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현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행규칙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테들을 다 점검해서 거기는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은희 위원 좋은 의견이세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서 제가 아직 제 나이와 학력으로 얼마인지를 확인을 못 했어요, 기록에 남을까 봐. 그래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

물론 개인 업체들인데 가격을 산정하는 노하우가 영업상의 비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훨씬 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 법을 만들었으면 이 루프홀 (loophole)을 최대한 줄여서 탈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시고 점검도 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서초구청장 할 때 민원을 많이 받

았어요. 특히 여자 부모가, 여자 엄마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거기 찾아가서 실태 점검한다면 다 잘 해 놓고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관리·감독 어떻게 했는지 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울고 들어오는 부모들이 없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리는 데도 있다고요, 큰 데든 작은 데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한규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항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은희 위원 선포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의견을 좀 달아 주셔야 됩니다.

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11시20분)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8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검토보고서상의 다문화학생 증가세를 보면 2020년에 14만 명에서 올해 2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수도권 각급 학교에서도 다문화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학생들의 생활 적응이나 학력 격차 해소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다음에 한국인 부모 출생 학생들과 화합이나 갈등 또 편견에서 서로 간의 인식 차이 이런 거를 좁히기 위한 지원 시책들도 다양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는 말하실 필요가 없고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보고해 주실 거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심리·진로 상담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탈북청소년들이나 아동에 대한 거는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교육부가 하고 있고 저희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거기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하나로 탈북청소년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 이주배경청소년 안에 다문화도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거기는 사실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도 포함되고 이주배경은 다문화보다 좀 더 포괄적입니다.

○**한지아 위원** 포괄적인가요. 거기에 탈북청소년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한지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될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부에서는 아무래도 전달 체계가, 전국의 244개 다문화가족센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현재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모든 센터는 아니지만 상당수 센터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중언어라든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군요.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건가센터하고 다가센터를 통합을 하고 있어서 사실 거의 다 통합이 돼서 기능은 가족센터가 다문화 사업도 하고 있는……

○**조은희 위원**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법률상은 용어를 여전히 두 개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가족센터 법적 근거도 건가법에 마련해 주셔 가지고 가족센터라는 용어도 법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여기 43, 44페이지 작성해 주신 검토의견 등을 보면 다문화학생 수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올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매년 증가 추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학교적응도, 자아존중감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여기는

지금 통계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전체 구성원 중에 자신과 같은 다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 소수로서 어떤 차별을 받고 피해를 받는 그런 사례들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오히려 학생 수가 점점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거 또는 이유.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우리 실태조사인데요. 사실은 이게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미미하게 낮아진 거고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서 지표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하신 결과를 저희 쪽으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실에.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0)

1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73)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801)

(11시26분)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7쪽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를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 가해와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를 시급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법들은 피해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거나 요건이 까다로운 등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를 위한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조문에 맞추어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방통위는 스토킹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시행일이 지금 현재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삭제 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삭제 지원 인력 확보 등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좀 나눠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50페이지의 1항은 지방자치단체만 추가되는 거고 이거는 관련 법령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됐고요. 2항, 3항, 4항은 김남희 의원안에 없는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으로 추가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원래 준용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소위원장 김한규** 아, 준용을 하고 있는 거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건 아니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1항은 비용 부담을 스토킹 행위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거고 이거는 온라인 성폭력 이거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성폭력방지법하고 동일하게 된 내용인데 준용하는 방식 대신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항, 3항, 4항까지 그렇고 5항은 김남희 의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내용은 동일하고요. 직접 규정한 조항들은 빼고 나머지 규정만 준용하는 걸로 자구 조정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김남희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뀐 건 아니네요, 시행 시기만 좀 달라지고.

○**김남희 위원**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온라인 스토킹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 2차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에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시행 시기는 어떠실까요? 보통 6개월 하는데 1년 정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일단은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인력에 대한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인력, 예산이 필요한 거면 그게 어느 정도 소요될지가 검토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가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인력이나 예산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보통 전담해서 할 인력은 한 두세 명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인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삭제 지원 요청 건수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몇 명 정도인지 결정할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명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국회 들어와서 이래저래 실태를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교육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피해가 벌어지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마련한 대응책인데 그걸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면 사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해서 한 6개월 정도로 좀 짧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좀 더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예, 일단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디성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가 법적으로는 위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디성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조직이 완전히 신설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일단 하다가 양이 많게 되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년이…… 아니,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1년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6개월도 저는 가능한 정도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김남희 위원** 6개월로 하고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다음 항목 논의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5쪽입니다. 법 보호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한규·조은희 의원안은 법 적용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하여 교제폭력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스토킹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현재 법적 정의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 없이 범죄 유형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제폭력 정의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법률에 명시되면 피해자 보호의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모두 스토킹 처벌법상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를 인용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사위원회는 해당 법률안 논의 및 의결사항에 맞추어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 근거를 법률에 신설할 경우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 내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내에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은희 의원안에 대하여 별도의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연계·통합하여 분과·전문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사위에 교제폭력과 관련된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처벌법의 의결을 전제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는 행안부 의견과 같이 현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제2 전문위원회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협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첫째, 법사위 교제폭력법 제정안이 언제 되는 거예요, 전망?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지금 법사위에 발의돼 있는 게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별도 법 제정안, 스토킹법에 포함하는 안 그다음에 가정폭력법에 포함하는 안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하고는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도 교제폭력법에 대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하고 교제폭력을 연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정했는지는 저희 한테 아직 공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 협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회의가 있는데도 이렇게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협의회를 신설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이게 기구가 기능과 조직이 있다고 다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제2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와 방식, 참여 기간, 논의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가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등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고 가외로 밀리지 않고 방지 협의회를 신설하지 않아도 제2전문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입증하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 횟수는 5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2전문위원회는 3년간 두 번 열었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두 번 열었고 이번 주에 한 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3년간 두 번 열어 가지고 그런데 제2전문위원회로 하겠다는 게, 제가 그래서 이걸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설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행안부야 조직 느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가부도 지금 행안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가부는 제2전문위원회가 그동안 잘했나 이 말이지요. 잘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잘했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가부가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이 협의회를 신설했는데 제2전문위원회로 하겠다면 입증해 주라는 거지요.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지적하신 대로 여성폭력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그 운영 횟수라든지 관계 부처 총괄 기능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이라든지 개최 횟수 등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을 새로운 위원회를 여성폭력의 유형별로 다 나눠서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이렇게 폭력 유형별로 위원회를 나눠서 만들기보다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체계로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회가 폭력 유형별로 1전문위원회, 2전문위원회, 3전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저희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데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여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명칭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교제폭력은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따로 떼 내서 이거를 조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횟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마 따로 빼내야지만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그 정책들을 입안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제폭력,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여성폭력위원회 밑으로 놓는다면 이건 어떻게 그 괴리를 갖고 갈지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름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여성이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에 있어서 훨씬 더 취약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도 받게 된 그런 폭력·스토킹—스토킹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따로 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은 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폭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제 중의 하나가 여성폭력의 정의 부분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법 제명을 포함해서. 맞습니다. 기본법은 여성폭력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성폭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스토킹방지법, 개별법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과 개별법을 좀 맞추겠다는 의미였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성폭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렇게 개별 피해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교제폭력이라든지 스토킹 범죄를 논의하더라도 남성 피해자를 제외하지는 않고 개별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범죄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는 개별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취지가 한지아 위원님하고 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에 여성폭력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남성 피해자를 집어넣는 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폭력은 지금처럼 여성폭력을 하고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은 성별하고 관계없이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별도의 위원회로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효율적으로야 사실 비슷한 성격의 업무니까 산하기관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폭력에다가 다 집어넣고 거기서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별도로 교제폭력 그다음에 스토킹·폭력 이거는 같이 논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혹시 그런 방향의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까 한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성폭력 범위에 포함, 확대하는 게 좀 어색하다거나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피해자 정의에 남성을 포함시키면서 예를 들면 법 제명도 같이 검토를 했을 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이라든지 약간 제명이 바뀌면 남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다뤄도 괜찮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별도 법에 협의회를 둬서 운영하는 게 더 실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있거나 실제로 법안이 나와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게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성폭력 세심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여성이라는 이름을 우리 사회가 쉽게 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폭력위원회가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여성폭력위원회에 남성도 포함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도 여성폭력위원회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제폭력,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성들의 피해도 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따로 떼어 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여성폭력위원회라는 부분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쉽게 빠지지 않도록 그것은 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저희 위원회 자체는 별도 위원회로 하고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앞부분은 저희가 법안을 상정할 때 좀 고민을 했던 게, 법사위에서 처벌법이 돼야지만 처벌법의 정의가 있으니 그것을 준용하는 우리 보호법이 논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있는데 이게 항상 똑같아요,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스토킹 피해자 보호처럼 저희가 먼저 하고 나서 그 압박을 느끼고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차피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되면 되는 거라 소관 상임위인 저희 여가부가 법사위 논의를 꼭 기다릴 필요 없이 이 논의는 진행하고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법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원회 내는 부분은 아까 정리가 됐고 —별도로 하는 부분—그것 외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측면에서 혹시 법안에 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참고로 스토킹 처벌법 자체도 법안이 여러 개라 그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그것은 오늘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처벌법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피해자 보호 측면만 보면 되는 거고요. 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는 66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실제로 조은희 의원님하고 저희 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지 협의회 부분 빼고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여기에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정의 조항에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을 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없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그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것도 같이 통과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 이렇게 하고 법사위에서 되는 대로 자구 수정을……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지요. 법사위에서 같이 통과시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지금 심사한 제9항부터 11항까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성폭력위원회 관련돼서는 지난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폭력기본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이것을 원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그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개념을 넓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념을 넓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논의나 갈등들이 있었던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고는 정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성별에 근거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하려고 했던 법인 것은 맞다. 그런데 다만……

○**조은희 위원** 논란이 있는 건 그냥…… 저희는 이대로 넘어가는 것도……

○**김남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마치 남성에 대한 피해는 포괄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있었던 맥락 자체는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맥락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지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저는 남성이 포함이 안 돼서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어느 의원님께서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안을 내시면 그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제가 낸 법안 부분은 지금 통과되어도 별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신……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통과된 거예요. 위원회안으로 그냥 문구만 조정하겠다는, 다 통과시킨 겁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뒷부분은 법사위에 연관돼서, 이게 묶여 있으면 앞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나요? 별도로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하나의 법안을 2개로 분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사위에서 저희 것을 빼고 김남희 의원님 부분만 통과시킬 수는 있지요, 법사위 자체에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시차를 달리해서 2개로 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김남희 의원 수정안을 보내고 다음에, 안 그러면 같이 묶여 있는 것을……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법사위에서 얘기해서 조속히 같이 논의하라고 할게요.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져요. 간사님, 먼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어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키면 저희 것을 따로 보내야 되는데, 시간을 늦춰 가지고.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1년 6개월로 단축했는데 교제폭력법안 때문에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 앞의 법이 너무나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소위원장 김한규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실무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김남희 의원은 법안을 따로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법안이라 논의를 같이 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로 묶지 않고 김남희 의원안 것은 따로 하고 조은희 의원님하고 제 것만 묶어서 위원회 대안……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의결 시기가 달라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의결 시기가 달라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같이 가면서 따로 분리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질 수가 있어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결 시기를 저희 법안소위를 다음에 또 열 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제폭력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다시 열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희 법안을 통과시켜야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은희 위원 오후에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나누게 되면, 저희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에 하는 게 지금 빨라야 국감 끝나고 11월 이후에 하게 되는데……

○김남희 위원 그런데 교제폭력법안은 아마 그 전에 통과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우리가 통과되고 나서도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그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아까 한지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토킹 범죄로 묶이는 것보다는 교제폭력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지아 위원 아니에요. 스토킹과 교제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김남희 위원 그래요?

○한지아 위원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그쪽의 법안이 3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아까 설명한 것대로.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가 낸 법안처럼 스토킹방지법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희 의원님 법안이 꼭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이 법안을 같이 처

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모양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정회했다가 오후에는 2시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2시 30분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정구창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에서 당 내부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만 진행하고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14시34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 제20항 총 8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8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되게 많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한 항씩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만 듣고 저희 위원들 논의는 일단 하지 않고 그렇게 죽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봤더니 수석전문위원이 한꺼번에 죽 설명을 하게 되면 정부 의견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따라가면서 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한 항씩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 의원안, 청원과 유사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박홍배 의원안은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6쪽,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박홍배 의원안에 대해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박홍배 의원안의 처벌규정 관련해서는 우리 부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역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해외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김용만·박홍배 의원안과 청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및 피해자의 인격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물 추가와 관련 박홍배 의원안은 제1호에서 출판물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2호의 전시물 또는 공연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상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현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영교·김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허위의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7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및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인 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강경숙 의원안은 국가의 의무에 실태 파악 및 존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백승아 의원안과 같이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 제10조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을 보존 및 관리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하여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조형물 지정·관리와 다른 의미로 별도로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고소·수사의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상징물이나 주요 유형문화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의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징물 지정에 대하여 해외의 조형물 또는 상징물 건립 주체는 타국 지역·시민사회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부작용이 있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칫 타국 관할과 중첩되어 해당 관할 당국과의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국내의 조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와의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외교부에서도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추모상징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3쪽입니다. 기념사업에 조형물 등 건립·보존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만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의 건립 및 보존 사업과 조형물 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개정안 제11조제1항제6호는 조형물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 수행의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국제협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국내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 건립과 보존에 있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제협력의 범위에 있어서는 외교부 의견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5쪽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조롱·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선민·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모욕 금지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 김용만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 등은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 없이 오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상 평화의 소녀상 등의 규격 또는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명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평화의 소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형량의 경우 김선민 의원안과 김용만 의원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

죄보다 형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안 18조의 형량이 재물손괴죄보다 낮아 별도의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부분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항목으로 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9항 남인순 의원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것인지는 관련 사업의 범위를 세계 여성인권과 관련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대외적 업무 수행 측면에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 소요가 수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47쪽,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업무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고 일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눔의집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사업 내용이 기존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단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조정과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안 제11조의5제8항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고착화하여 지역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명예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안부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일부 민간단체나 피해자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5쪽입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특례 신설 기준 중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 요건도 부족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부에서는 국공유재산 무상대여가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항목 넘어가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다음은 20항 박희승 의원안입니다.

59쪽입니다. 국가의 의무에 기념 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념 사업 등의 수행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규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의 책무 규정에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다음 63쪽입니다. 기념 사업 등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거나 유가족이 없는 피해자인 경우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품의 경우 보존 필요성 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품과 사후 정리 유품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사후 정리 대상으로서의 유품은 현행법 제4조 지원 내용에 유품 정리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 자료로서의 유품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역사적 자료의 범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있는 유품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항목 넘어가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9쪽입니다. 기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기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민간 법인이나 단체의 기념 사업 등의 수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민간단체 등이 기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청원은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 18번 항목의 청원 이 제목이 전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 청원은 처벌 위주라서요 처벌 규정에 다 같이 녹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청원소위로 갔는데 청원소위에서는 입법사항이라고 다시 법안소위로 넘기는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이 법안 처리……

○소위원장 김한규 법안을 만들 때 그러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많고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공식 회의 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논의 전에 제가 의견은 아니고 자료 확인차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니까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법률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법률의 내용도 다 다른데 특별법으로 처벌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법 말고……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현재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에 공공기록물로 지정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게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혹시 지자체별로 지정 기준이라든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중앙부처에서 또 별도로 보완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록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피해자 의사가 좀 부정적이신데, 사전 협의하지 않아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몇 군데 단체가 좀 부정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게 단순히 사전 논의에서 불쾌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조은희 간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법안 및 청원과 관련해서 정부 및 여러 단체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논의하다가 조문을 좀 정리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 있는데요. 제5항 및 6항입니다.

혹시 조문대비표 자료를 나눠 드렸나요?

먼저 오전에 논의했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의원안의 제15조제6항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논의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한 수정의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5항 및 제6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3권이지요. 21항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여기 앞부분 잠깐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3)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58)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64)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08)

(14시53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쪽입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춘생·장철민 의원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

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규정의 취지는 동일하나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바 2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제7조제1항 및 유사 입법례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치료의 심각성, 상담의 종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하니까 법안을 두 의원님이 내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던데? 여가부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사례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결석대체를 출석으로 인정받기가, 승인받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다른 항목으로 하게끔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쪽으로 얘기했던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규정이 명확히 되면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학교를 안 나가고 이걸 활용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약간 신중 검토라는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또 보장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니까 상담소에서 잘 보호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학교 가기 싫을 때 이런 걸로 해서 빠지고 이럴 가능성성이 있다라는,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약간 있기는 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혹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빙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 안으로 보면 그냥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문에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러니까 현행 7조 2항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출석일수 산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학교장이 이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산입의 정확한 일수나 이런 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학폭법에도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든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런 것들이 그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타 입법례를 보고서 반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의견은 치료의 경우 지금도 진단서로 병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상담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으로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명시할 수 있긴 한데요.

○**한지아 위원** 지금도 진단서로 병가 처리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예, 지금도 가능한 건데 타 입법례에 이런 게 있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 단체에서 반대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 규정을 활용해서 그럴 우려가 있다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괜찮다고 봅니다. 출석일수 인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렇게 기준을 넣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협의회에서 우려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을 저희들이 시행령하고 규칙이라든지 지침 마련한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서 문제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3시가 돼 갖고요, 가셔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고 있었지요. 7페이지, 21항의 2항부터 수석전문위원님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쪽입니다.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춘생·장철민 의원안은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 퇴소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자립수당 지원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는 바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거나 입소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소한 피해자도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은 장철민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올리겠다는 거고 다만 요건을 정춘생 의원님하고 장철민 의원님이 조금 달리하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법으로 근거를 올리는 것 자체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는 원래 신중 검토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자립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법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이 제안해 준 것처럼 현재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까지 저희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혹시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항목 넘어가 주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기상·이달희 의원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한편 최기상 의원안은 입소기간 연장 대상을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일반보호시설 등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입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달희 의원안과 같이 보호시설의 미성년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달희 의원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인 입소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보호시설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입소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시설의 특성에 맞게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이 체계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3쪽,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최기상 의원안에 대하여 전국성폭력피해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달희 의원안에 대해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기상 의원안에 대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 내 초등학생 입소자부터 25세 성인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는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할 때, 23세까지 보호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1쪽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춘생·장철민·최기상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는 바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거나 입소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소한 피해자도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는 장철민 의원안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거나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퇴소한 경우만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제4호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므로 17조의2제1항제2호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은 중복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일반 및 장애시설에도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퇴소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아동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아동에 추가하는 내용이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개정 추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우리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정춘생·장철민 의원안처럼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이분들 피해자한테 뭔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하게 되는 건지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혹시 그걸 비교한 게 있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6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즉 각 호의 내용을 보시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그다음에 자립수당은 앞에서 반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3호 보시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반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을 거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만 추가적으로 더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더 해 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아동복지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여기다가 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사항들이 나와 있고 그것 관련된 각 조문들이, 별도로 전담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문별로 다시 또 기술돼 있고 그렇게 씨앗 형성 같은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발의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명시하고 그다음 조문들로서 각각의 사항들이 별도로 조문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하여튼 현행으로도 친족 관계 피해자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건 아동복지법에도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현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에 따로 있지는 않고 정춘생 의원님이 이 법하고 아동복지법 두 가지를 다 같이 발의하시면서 아동복지법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하여튼 여성가족부는 이 법안들 말고 아동복지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할 때 거기마다 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예,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달 체계 안에서 다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전달 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 없으시면 그 부분은 아동복지법 쪽으로 논의를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9쪽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가정복귀 절차 등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춘생·장철민 의원안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 및 사후 관리와 같이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사후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2개의 개정안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며 보호시설 중의 하나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춘생 의원안과 같이 안 17조의3에서 모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복귀한 곳의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인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전국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아동복지법상에 성학대가 포함되면서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결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 복귀 절차를 우리 법에 준용하는 것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기반적인 그런 조항들이 선조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의무만 부과하고 나면 사실 사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사실 저는 이것이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간의 성폭력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데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고 2·3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가정 복귀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원가정에 다시 복귀하면 그 아동은 또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복귀 절차 마련이 자칫 잘못된 신호로 읽혀지기 쉽다, 그래서 이것을 여가부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돼서 신중한 대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가요?

○김남희 위원 저는 여기 ‘법정’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법정 보호자가 있는, 전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취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31페이지 상단 박스에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장 송영광 성폭력방지과장 송영광입니다.

전국성폭력보호자시설협의회에서 얘기하신 건 아마 이쪽에 있는 게 보호시설장으로서 법적으로 보호자이기는 하지만 친권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퇴소를 요청했을 때 아동복지법상에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신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인 경우에 저희 시설에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연계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성학대가 아동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말을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시설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법정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정에 가면 안 돼. 안 되는데 제가 가면 안 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동복지법에 이런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애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뒷부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앞부분에 보호시설의 장은 법정 보호자가 아니니까 뭔가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방어적으로 읽히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이 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협조적으로 아동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 보호시설협의회의 장은 뭔가 ‘아이고, 나는

보호자도 아닌데 내가 아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약간 이런……

○조은희 위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김남희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규정을 만드는 게 맞지……

○조은희 위원 아니, 이 개정안은요 시설장은 얘는 집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는데 시설장이 법정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못 한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 법조문이 나오면 오히려 이 법조문에 따르면 모두의 의견을 듣고 그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짧게 되어 있으니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 이거 들어 보니까 얘는 가면 안 돼'라고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 주는 조문인데 왜 이게 실익이 없다고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조은희 위원 이게 만들어 주는 조문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지금은 시설장이 판단해서 복귀 절차를 이렇게 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법정 보호자,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 중에 자녀 간에 이렇게 발생한 성폭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예를 들면 재혼을 했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부모나에 따라서 이것을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다르게 결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정 보호자로서 이렇게 요청했을 경우에는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남희 위원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요. 사실 이 조문 내용을 보면 응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의견을 다 듣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만 복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절차적으로는 그 말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은희 위원 조문상으로는 그렇지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장 송영광 성폭력방지과장 송영광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염려되는 것도 짧게 쓰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복귀를 할 때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시도나 관련 의사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사례를 회의를 하는데 아동복지법상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원가정 복귀로 심의가 이루어지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봤을 때는 시설장이지만 본인의 의견보다는 지자체장이나 다른 분의 의견들이 좀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조은희 위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한다고, 집에 가라고.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여성가족부는 현행법 체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가정 복귀의 근거가 돼서 오히려 부정적이다라는 취지인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그것도 있고 일단 여기에는 시설의 시설장이 그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거기 현장 가서

그 사람이 원활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려면 조사권한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건데 조사권한 자체도 지금 현재 이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아동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조사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책임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보고 싶은데요. 지금 피해자 가정 복귀 지원 조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정 복귀한 다음에 사후 관리 부분이 있어요. 사후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시설의 장이 이미 돌아간 사람이, 피해자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 말고 복귀 지원 부분이 저는 이 조항의 더 핵심인 것 같은데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정 복귀 신청하게 되면 의견 구해서 가정 복귀시킬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잖아요. 이것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 조용수 일단은 복귀 지원 절차에서도 여기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부분에서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처럼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까와 같이 재혼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부분도 바꿔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다른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입소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특별지원 보호시설에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로 한정 짓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 들어 보면 기준에 다른 법안도 있고 굳이 이 조항은 통과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더 특별하게 취급해 주고 더 피해가 크니까 이 친구들 더 챙겨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취지를 알겠는데 이미 일반적인 보호시설에 관한 조항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라 굳이 이 법안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5쪽입니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달희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서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한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6시21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1쪽입니다.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춘생 의원안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친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지 여부는 친족 성범죄의 특성, 기존 공소시효 배제 범죄와의 가별성 비교,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 범죄와의 형평성, 사회의 처벌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도 시효 정지, 연장, 배제 제도가 마련된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나이, 범죄 유형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개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

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절반 가량이 유년기에 몰려 있는데 상담자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야 상담을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면 이들은 그 피해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무부 의견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43페이지 하단에 각주 26호인데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현행법상도 이분들이 성년이 된 다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물론 가족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부담은 느끼겠는데 그때부터는 판단해서 공소시효 약 10년 정도가 적용되니까 그 안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다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없는 게 맞을 수 있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미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저도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몇 년 정도가 적합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시된 안이, 이종배 의원안이 10년 연장 그리고 김승수 의원안이 15년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아마도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공소시효 진행되면서 만약에 7년이 적용되는 형이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10년이 더 추가 연장된다, 15년 더 연장된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그렇다면 추가로 기간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황이 궁금한 게, 친족 피해자들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실태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

저희가 따로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현장 단체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후에 10년 동안 발효가 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별히 친족 성폭력 문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현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형소법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친족이란 말이지요.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친족 간의 성폭력은 그 정도로 중대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남이 하는 거랑 친족이 하는 거랑은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시 폭력을,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장간·준장간을 할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적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더 의견 말씀……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아까 전에 조은희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대부분 다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상담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에요?

○**조은희 위원** 그것은 50%가요.

○**한지아 위원** 50%가요.

○**조은희 위원** 성인이 돼서.

○**한지아 위원** 성인이 돼서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성인이 되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이런 분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친족의 의존도가 경제적으로도 꽤 많이 묶여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떤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조용수** 현장에서는 아까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50%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지아 위원** 그러면 50% 정도 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법이 해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폭력 처벌법 봤더니 이렇게 여러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 적용 안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알면서’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장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여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들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5항과 동일하게 고의를 명시한 표현으로 보아 삭제하더라도 내용상 변동이 없다는 입장과 예외적 처벌 또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요건으로 보아 삭제 시 규정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 현행법은 일반 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3호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도 ‘알면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성폭력 처벌법의 성착취물은 ‘알면서’를 제외하는 것이 다 통과가 됐고요 그때 아동법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25항 및 26항,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29항하고 30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7항, 28항은 양이 좀 많아 가지고 29항, 30항 먼저 하겠습니다.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16시32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1쪽입니다.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 추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물품과 서비스 외에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 요청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일부 인용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원래 서면으로 나온 의견에 ‘개정의 실익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법안이 내용이, 조문이 여러 개니까 그중에 뭐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 의견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두 번째 복지지원 중복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중복금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가부는 이미 시행령에 하고 있으니까 개정 실익이 없다는, 복지지원 중복금지 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린데 그것은 법에 규정해도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바꿔는 게 없다라는 건데 시행령을 상위법령으로 옮리는 거니까 의미는 있을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9쪽입니다. 청소년쉼터의 원활한 입소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미애·조은희 의원안은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알림금지 또는 연락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 입소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임미애 의원안 제32조의2제1항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보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보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 제3항의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소 금지 사유는 현행과 같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가정복귀가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상 친권에 따른 미성년자 양육권, 거소지정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안 제3항과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알림금지 또는 연락의무 면제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임미애 의원안 및 조은희 의원안은 규정의 취지는 동일하나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안은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등에게 청소년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조은희 의원안은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의원안 모두 알림금지 또는 연락 면제 사유를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소 금지 사유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민법상 친권을 고려하여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리도록 하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시행령 정비를 위하여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쉼터가 아닌 경찰, 구청에서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되 경찰, 구청에서 쉼터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알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쉼터협의회는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어쨌든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을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친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여가부 수정의견으로 수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게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청소년 입장에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 버리면 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저도 이 취지에 적극 동의가 되고요. 다만 이 두 안에서 차이가 검토의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호자 또는 친족에게 알릴 것을 의무로 할 것이냐 재량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가정폭력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로 할 것이냐 재량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사분면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오게 될 경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의견처럼 그 경우에 친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로 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울산광역시에서 주신 의견을 보면 위치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알리는 방안, 약간 절충적인 의견이신 것 같긴 한데 현재 청소년쉼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하나의 광역시 단위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는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전국적으로 137개소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예.

○**이주희 위원** 많지 않네요. 그러면 만약에 보호자가 알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위치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주희 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노출되지 않는 데 어쨌거나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137개 쪽 전수조사만 해도…… 요새 스토킹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대안으로 마련되더라

도 울산광역시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안은 결국은 부처 수정의견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둘 다 의무로 하는 거지요. 원래는 알려야 되는 게 의무고 가정폭력일 때는 알리지 말아야 되는 의무고 그런 거네요?

○**이주희 위원** 예.

○**조은희 위원** 저는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저도 이거 민원을 현장에서, 중장기청소년쉼터 갔다가 이런 요구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법안을 어디다 냈냐면 실종아동 보호 지원법으로 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에 따르면 알리도록 의무가 부과돼 있어서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개정해도 그 법은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반법·특별법으로, 이 법안이 신법이고 특별법이라서 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 법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복지부랑 협의하셔 가지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지원법에 따라서 시설,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장이 알리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은 그 법도 개정해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저도 고민을 하다 법체계상 그게 더 맞다고 해서 거기다 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법안을 냈고, 이 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법의 의무 자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민원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라 그거 자체도 저는 꼭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라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에서 보시기에.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위원장님, 그 부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법안 자체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요 넘어가야 되는데……

서명옥 위원님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다시 27항, 28항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항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2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26)

(16시42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 변경

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경력직의 이미지로 치환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전문성, 가능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의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용어 변경이 경력단절의 심각성, 중요성, 구조적 문제성 등을 희석·경감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이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고 오히려 여성의 사회 복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절여성등'을 '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는 거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그런데 단절이라 했을 때 느낌하고 경력보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정부한테 묻는데요. 정부는 당초 신중 검토였다가 지금 수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원 필요성을 희석시킬 우려는 없는지, 그 조사를 해 봤는지, 갑자기 바뀐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의견들이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아마 현장조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를 보면 약 70.5%가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설문조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경단녀, 경단녀'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보녀, 경보녀'……

○**한지아 위원** 경력단절이라는 거는 경력을 보유하다 그러다가 이게 끊긴 거지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력보유 중에서는 곧바로 연계해서 경력자들을 뽑을 때 단절이 없이 이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책 지원자들은 아마도 경력을 보유하는데 이게 끊기고, 그러니까 인터벌이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차원일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신중 검토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정책 대상자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경보녀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런 우려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지금 현재 법의 그 정의 조항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나 경력보유여성이나 사실 실질적인 정의를 같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하게 가져갈 걸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56페이지 각주 33번을 보시면……

○한지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느낌이 바뀌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법률 자체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그래서 경제활동을 중단했는데 취업을 희망한 이런 분들을 포함하는 거라 저는 용어가 바뀌면 초반에 혼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법체계가 안 맞거나 아니면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어떤가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난 정부—2024년 10월이니까요. 그렇지요?—에서 출범한 저출생 대책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모니터링단 이게 출범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논의를, 이걸 ‘국민WE원회’라고 해서 ‘WE’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출산과 육아, 양육 관련 일부 용어가 결혼, 출산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좀 강력하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경단녀 표현이 그중에 하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오히려 여성들이 스스로가 경단녀가 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측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선언적으로 저희가 법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반대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9쪽입니다. ‘돌봄’을 ‘돌봄노동’으로 용어 변경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주요한 사유가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것임에도 경제활동이 중단된 기간의 육아 등 가정 내 돌봄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기간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 등 가정 내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돌봄노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여성의 주요한 경력단절 사유인 육아는 돌봄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돌봄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정의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돌봄의 준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법에 규정할 경우 자칫 돌봄노동의 여성화를 고착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신중 검토니까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번.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3쪽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무엇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하여튼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이견 없습니다.

○이주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5쪽입니다.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5조제2항제4호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그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67쪽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 기업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또는 조세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경력 단절여성 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조세 감면 조치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은 해당 법에 규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국세·지방세 등 조세 지원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할 사항으로 법체계상 부적합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조은희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취지는 필요한 것 같은데 법체계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다른 법률에도 이런 논의가 있는데 항상 이거는 기재부 의견을 고려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재위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논의하는 게 우리 국회의 관행이기도 하니까 저희는 추후에 의견을 반영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시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1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기여한 기관 등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의원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마지막 7항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5쪽입니다. 경력단절 사유에 중증질환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여성 등 및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중증질환을 명시하고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업무에 중증질환 치료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은 성의 구별 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사유에 명시하는 것은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구조적 문제성을 회석·경감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현행법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질환을 사유로 명시할 경우 오히려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 사람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거는 신중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저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법을 제안하신 이유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중증질환이라고 하는 게 중증 여성 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사전에 제가, 발의한 전진숙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들었는데 이번에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동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의결할 게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가지 마시고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1항 먼저 하시고……

○소위원장 김한규 29항 먼저 하겠습니다.

제29항, 제30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항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준비된 게 다 끝납니다.

○서명옥 위원 추진력 완전히……

○소위원장 김한규 서명옥 위원님 덕분입니다.

3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16시56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0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호여성'으로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으시지요?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논의하고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여성가족부차관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남희 김한규 서명옥 이주희 조은희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정책기획관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